

8. 建築行政의 刷新을 위한 特別對策

資料提供：建設部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

○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에서는 7월까지 대민행정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책반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반영키로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국민편의 위주로 과감히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둘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한 불법 및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건축직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키로 하였고

넷째: 건축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다섯째: 현행의 건축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건축행정과 관련한 광범위

한 여론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고 여론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7월중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하였다.

※ 첨부: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주요토의안건

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주요토의 안건

1. 건축법령 정비

○ 현 황

- 조례제정범위의 협소
 - 용도지역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등 8종
- 행정절차의 복잡
 - 허가절차 관련법률: 약 15개 법률
 - 준공절차 관련법률: 약 5개 법률
 - 공사중 경미한 사항은 변동시마다 허가 또는 신고
 - 개괄적 건축규정에 따른 기준의 불명확

○ 문제점

- 절차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 처리에 장시간 소요 및 부조리발생
- 일선 행정기관의 경직된 법률운영
- 모호한 건축기준에 따른 자의적 행정 처리

○ 검토내용

- 조례제정의 범위확대 및 세부 운영방침 마련
- 허가창구의 일원화방안 강구
- 인·허가사항에 대한 일괄처리방안 강구
- 건축기준의 명확화(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건축사제도 개선

○ 현 황

- 건축설계 및 감리자의 이원화
- 건축허가신청전 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신고
- 단독주택 및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등 업무대행

○ 문제점

- 건축사가 부족한 지방 및 소도시에서의 감리기능 미약
- 도서신고시 건축허가전 형식적 심사

○ 검토내용

- 설계 및 감리자 이원화제도 개선
- 대한건축사협회 지부에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 등 사전심사기능 강화

3.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 현 황
 - 건설부 주관하에 연 1회 실시
- 문 제 점
 - 비전문기관인 건설부의 시험운영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시험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 미흡
- 검토내용
 -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위임

4. 건축분야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개선방안 강구

- 현 황
 - 서울시 각 구청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문 제 점
 - 설치근거규정이 없고 위원회 상정절차 및 구체적 처리지침의 부재
 - 홍보부족으로 이용율 저조('90년 상정대상의 0.4%만이 상정됨)

- 검토내용
 - 근거규정 설치 및 현행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5.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억제방안 강구

- 현 황
 - '90년 건축허가분에 대한 위법발생율: 2.5%(6대도시 표본조사)
 - '90년 건축허가분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발생율: 12.6%(허가 188,959동/무허가 23,790동)
- 문 제 점
 - 인력부족으로 행정단속 미흡
 - 벌칙의 실효성 미흡
 - 건축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정책적 양성화 기대감 만연)
 - 무허가 및 위법 건축행위 고질화
- 검토내용
 - 과태료부과 철저 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쇄
 - 사전 단속 강화 및 중앙합동점검 실시
 -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감시제도 도입(건축지도원: 사법권 부여)